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의 현행 계산식은 미래에 소요될 건설비를 현 시점에서 우선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여 전체 사업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방식(현행 시행령 별표 2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개선(별표 1)

- 1)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를 비용산정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정잔액을 차감 후 미래 반입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저준위방 사성폐기물	드럼 (1드럼 = 200리터)	$\frac{\text{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 \text{중·저준위 계정잔액}}{\text{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
-----------------	------------------------	---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 이후 연도별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2. "중·저준위 계정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잔액으로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3.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

리시설에 연도별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 반입량을 말한다. 다만, 처분시설 운영 종료 시점까지의 총 처분량은 80만드럼으로 한다.

4. "처리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에 적합하도록 재포장, 용적 감소 등의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처분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재포장, 용적 감소 등의 처리를 한 후 남는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말한다.
6.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중·저준위 계정잔액,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 실질할인율 및 드럼당 관리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환경과	
연 락 처	(044) 203 - 5343